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(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)

의 안 번호	
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의 주력산업인 전기·전자, 모빌리티 등 산업에 활용되는 반도체 소재·부품 국산화 및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센터 공간 및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“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” 5년간 사업 수행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 필요
- 나. 금오테크노밸리 내 스마트커넥트센터 5층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“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”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전자정보 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사용료 감면
- 위 치 :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, 스마트커넥트센터 5층
 - 사용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
 - 사용(감면)기간 : 2025. 1. 1. ~ 2028. 12. 31.(4년)
 - 사용면적 : 870.61㎡(전용면적 634.38㎡, 공용면적 236.23㎡)

(5) 감면금액 : 118,219,200원[29,554,800원 x 4년]

구 분	연간 사용료 산출내역	연 사용료
대 부 료	재산가격 1,182,192,316원 x 2.5%	29,554,800원

3. 관계법령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제20호, 제17조제5항제2의2호

4. 참고사항

가. 스마트커넥트센터 개요

- (1)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(금오테크노밸리 내)
- (2) 건 립 비 : 126억원(도 37.8, 시 88.2) ※ 준공일 : '20. 11. 13.
- (3) 규 모 : 지상 5층, 지하 2층, 연면적 5,858.6㎡
- (4) 건축물 용도 : 교육연구시설
- (5) 운영방법
 - 건물 운영 및 관리 : 구미시(신산업정책과) 직접운영
 -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운영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(주관기관)

나.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사업 개요

- (1)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, 스마트커넥트센터 5층
- (2) 규 모 : 연면적 870.61㎡
- (3) 사업기간 : 2024. 6. 1. ~ 2028. 12. 31.

- (4) 총사업비 : 167억원(국 100, 도 16 구미시 38, 성남시 13)
- (5) 사업내용 : 방위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고성능/고신뢰성 시스템
반도체 부품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(설계, 제조,
패키징, 모듈화, 시험·검증·실증)

다. 추진현황

- 2023. 10월 : 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수요조사서 제출
- 2024. 1월 : 사업 공고
- 2024. 5월 : 사업 선정 대면 평가
- 2024. 8월 : 협약 체결
- 2024. 9월 : 공유재산심의회 심의

라. 향후추진계획

- 2024 . 10월 :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의회 동의
- 2024 . 11월 :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업지원
사업 추진

마. 기대효과

- (1) 방산용 반도체 및 부품 관련 지역기업의 제품 상용화 기간 단축
및 비용 절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
- (2)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통한 방산
혁신성장 생태계 조성

■ 위치도



■ 조감도



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0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신산업정책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조 영 열)
	팀 장	김 은 화 (이 은 아)
	담 당 자	전 규 진 (480-5073) (남 미 래) (480-6173)